

# 정 관

##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제정 1996. 04. 25

개정 1999. 02. 01

개정 1999. 06. 14

개정 1999. 10. 04

개정 1999. 12. 13

개정 2000. 03. 22

개정 2001. 02. 21

개정 2003. 03. 26

개정 2003. 06. 05

개정 2004. 03. 26

개정 2005. 03. 28

개정 2006. 03. 17

개정 2006. 05. 22

개정 2007. 06. 28

개정 2007. 11. 02

개정 2008. 03. 11

개정 2008. 05. 09

개정 2008. 09. 25

개정 2009. 01. 22

개정 2009. 09. 16

개정 2010. 08. 06

개정 2011. 02. 16

개정 2013. 03. 28

개정 2013. 09. 13

개정 2014. 03. 26

개정 2019. 03. 27

개정 2019. 10. 11

개정 2021. 03. 29

개정 2022. 03. 29

## 전 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정관 전문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회사’라 한다)는 ‘Leader In Entertainment’를 핵심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하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을 실천한다.

회사는 지속적이고 더 나은 콘텐츠 개발과 유통을 통해 최고의 음악, 퍼포먼스,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대중의 기대를 충족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회사는 구성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여 구성원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회사는 함께 일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를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동반 성장을 실현한다. 회사는 경영 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과 사회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며,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회사는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수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투명한 경영과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한다.

회사는 경영활동을 통해 구성원,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리더로서 최선을 다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JYP Entertainment Corporation(약호 JYPE)이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2.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3.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4. 시스템 통합사업
5. 무역업
6. 수출입업 및 수출입 중개 및 대행업
7. 관광숙박업 및 설치, 운영,회원모집, 임대, 위탁운영업
8. 휴양콘도미니엄의 설치 및 분양, 회원모집, 운영, 위탁운영업
9.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설치, 운영, 위탁 운영업
10. 유원시설업
11. 관광편의시설업
12. 체육시설업 및 설치, 회원모집,운영, 위탁 운영업
13. 해양스포츠시설 개발 및 설치, 운영, 위탁 운영업
14. 해외관광지 개발 및 투자, 회원모집, 관리
15. 빌딩 및 공동주택관리업
16. 건축공사업
17. 토목공사업
18. 토목건축공사업
19. 조경공사업
20. 조경식재공사업
21. 실내건축공사업
22. 일반여행 알선업
23. 항공권 및 선포 발권 판매업
24. 국·내외 연예인 및 스포츠 선수 기타 공인 매니지먼트업
25.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26. 각종음향물 녹음제작업
27. 음반의 제작 및 유통 판매업
28. 이벤트사업(각종행사의 기획, 연출)
29. 영상음반 제조업
30. 음반류 제조업
3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32.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33.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34. 방송 영상물 제작 판매업

35.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업
36. 학원사업 등 교육서비스업
37. 직업소개 및 인력파견업
38. 광고 기획, 제작 및 대행업
39. 인터넷 방송사업
40. 캐릭터(영상저작물) 사업
41. 비디오 및 각종 영상 매체의 제조 및 유통 판매업
42. 출판업
43. 인쇄업
44. 부가통신업
4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46. 의류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47. 섬유 피혁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48. 스포츠레저용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49. 운송 및 창고업
50.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51. 신용카드업
5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53. 가맹점사업 및 체인사업
54. 사업경영 용역업
55. 시장조사, 판로개척, 판매전략, 판매촉진에 관한 서비스업 및 경영위·수탁업
56. 이미지 초상권, 메니지먼트, 라이선스 사업
57. 공연예술, 콘서트의 외주진행 컨설팅
58. 게임 S/W 개발, 기기의 제조 유통 판매
59. 드라마 제작, 영상권 판매업
60. 유비쿼터스 통신, 콘텐츠, 네트워크 사업
61.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업
62. 구두, 장신구, 안경, 잡화류 등의 제조, 도소매 및 수탁판매업(판매대행)
63. 식품 제조 및 가공판매업
64. 영화제작 및 배급업
65. 영화수입 및 배급업
66. 방송채널 및 인터넷 TV 사업

67. 인터넷 포털사업
68. 홈쇼핑 운영업
69. 국내외 투자업
70. 전기자동차 연구개발
71. 전기자동차 판매
72.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모집 및 관리
73. 전기자동차 부품 연구개발 및 제조
74. 전기자동차 부품 판매
75. 전기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출입
76. 커피전문점 및 카페운영
77. 가상화폐 개발업
78.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79. 블록체인 연구개발업
80.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81. 블록체인 투자 및 관련서비스업
82. 블록체인 데이터 생성 및 네트워크 관리 사업
83. 블록체인 활용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구축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사업
84. 디지털거래소 보안서비스 및 가상화폐 유통 관련 에코시스템 구축 사업
85. 전자 및 기록매체 출판물 제조업
86. 사진촬영 및 처리업
87. 디자인업(산업디자인 포함)
88. 플라스틱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
8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90. 가발, 장식용품 및 전시용 모형제조업
91. 국내외 음악 저작권 대리중개업
92. 국내외 음악 저작권 라이선스업
93. 국내외 음원 관리 및 매매업
94. 음악 저작자 매니지먼트업
95. 저작인접권 관리 및 중개알선업
96.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ype.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 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5,000 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및 기명식 전환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②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2%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총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④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우선 배당율에 해당하는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제 8 조의 3 (전환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회사가 발행할 전환우선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 이상으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전환우선주식 1 주는 그 주주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보통주식 1 주로 전환되며, 전환우선주식의 전환기간은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발행 전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 기간 내에서 전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는 보통주식의 분할, 병합, 유무상증자 등 기타 전환우선 주식발행 전에 이사회가 정한 전환우선주주의 지분율(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 비례지분율)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의 전환비율 조정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익배당 가능액이 전환우선주식에 대한 최소배당 총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배당을 아니할 수 있다.

⑤전환우선주식은 발행 전에 이사회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권리와 특성을 가질 수 있다.

⑥전환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고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⑦제 2 항 또는 제 6 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 을 준용한다.

**제 9 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이사회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단,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9 제 3 항 제 1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따라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7 및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근로복지기본법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개생작업의 일환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으로 출자전환 또는 신주 대금납입을 조건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액면총액이 1,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신기술 도입 등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 3 자(법인 및 개인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제 10 조의 2 (주식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단,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 국내외 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 및 관계회사(상법 시행령 제 30 조)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상법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 (상법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는 기발행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1 주당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 조의 3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①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 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 13 조 (주주명부의 기준일)** ①회사는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제 14 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을 일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3. 회사가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기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의 100분의 70 을 한도로 하되, 운영자금의 조달, 부채의 상환, 차환발행 등의 용도로 발행되는 금일천억원 이내의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사모(私募) 발행일 경우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 규정을

준용하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에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⑥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되는 사채액면 금일천억원 이내의 전환사채를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의 최저 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5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을 일천오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회사가 기술도입, 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가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을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며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시가 하락에 의한 신주인수권가액 조정시 조정 후 신주인수권가액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의 100 분의 70 을 한도로 하되, 운영자금의 조달, 부채의 상환, 차환발행 등의 용도로 발행하는 금일천억원 이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 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모(私募) 발행일 경우 발행일부터 1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되는 사채액면 금일천억원 이내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최저 한도는 액면금액까지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5 조의 2 (교환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팔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17 조 (소집시기)** ①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말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 회일의 2 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 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 권유에 대한 지원,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활용한 의결권 행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 사, 이 사 회, 위 원 회

**제 29 조 (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9 인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 시 성별, 연령, 경력,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양성을 확보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동일한 사업연도에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적이사수의 4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해당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3 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 (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회사 및 주주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회일 당일 시작 2 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구두, 전화 또는 Email 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7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방법은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회사의 “관계사 거래규정” 및 “투자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는 이사회가 특별결의로 한다. 특별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독립이사 1명 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③이사회 의장은 제 36 조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④이사회에 부의된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38 조 (이사회 의의사록)** 이사회 의의사에 관하여 의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 39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방법, 금액 등을 정한다.

②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이사회가 지급여부 및 방법, 금액 등을 정한다.

**제 40 조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 배(독립이사는 3 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 397 조, 제 397 조의 2 및 제 398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1 조 (위원회)** ①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감사위원회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③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36 조부터 제 38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 43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 조에 규정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가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원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그러나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을 독립이사로 한다.

③감사위원 중 2인 이상은 상법 시행령 소정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독립이사인 감사위원 중에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 44 조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①감사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한다.

③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45 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④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위원회는 본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 46 조 (감사록)**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7 장 계 산

**제 47 조 (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당해년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48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①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회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0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 사업년도 말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 3. 배당금
- 4. 임의 적립금
-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 51 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2 조 (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제 1 조 (세칙내규)** 본 회사의 업무추진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2 조 (규정 외의 사항)** ①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②제 42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정관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첫번째 사업년도는 2011 년 7 월 1 일부터 2011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③제 13 조의 1 항의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2011 년 06 월 30 일 기준일자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2011 년 7 월 1 일부터 2011 년 7 월 7 일까지로 한다.

이 정관은 2011 년 02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4 조 (공고방법)"의 시행일자는 합병기일(예정일:2013.10.17.)로 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4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9 조, 제 11 조, 제 12 조 및 제 16 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5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1 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사업년도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 26 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 29 조, 제 37 조의 제 2 항, 제 40 조, 제 43 조의 제 2 항 및 제 4 항 개정 규정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 29 조의 이사회 내 독립이사의 수는 2027년 07월 22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 4 조 (감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 44 조의 제 2 항 및 제 4 항 개정규정은 2026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